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와 기억의 전승*

손정권**
sjkbin@yahoo.co.kr

< 目次 >

- | | |
|--------------------------|---------------------|
| 1. 들어가기 | 4. 기억의 공동체로서의 상징천황제 |
| 2. 일본국헌법과 근대천황제의 변용 | 5. 나가기 |
| 3. 상징천황제의 전승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 | |

主題語: 천황(Tenno/Emperor), 상징(symbol), 천황제(Tenno system), 상징천황제(Emperor-as-a-symbol system), 일본국헌법(Constitution of Japan), 황실전법(Imperial House Act), 기억의 전승(Tradition of memory), 사회적기억(Social memory), 집단적기억(Collective memory), 기억의 공동체(The community of memory), 역사인식(Recognition of history)

1. 들어가기

잠재된 군국주의의 변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네오내셔널리즘은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전전의 일본이 선택한 팽창주의적 군국주의의 이면에 천황제 파시즘이 작용하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천황제 파시즘은 전후 일본의 전쟁책임 처리를 위해 설치되었던 GHQ가 일본의 군사화를 억제하기 위해 개정 공포한 일본국헌법에 의해 철저히 구속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점에서 2010년 이후 최근 일본사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하시즘(ハシズム¹⁾)은 일본국헌법에 의해 억제되었던 일본의 팽창주의가 현실과 괴리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헤이와보케(平和ボケ²⁾)의 변형된 한 요소로 이해할 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35C-A00225)

** 부경대학교 강사

1) 橋下主義라고도 함. 하시즘은 상위 지사체에 해당하는 大阪府의 수장자리인 知事の 좌를 버리고 大阪市長에 출마하여 당선된 橋下徹가 주도하는 일련의 정치 스타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하시모토 토오루의 독단적 정치스타일이 파시즘적이라 하여 하시모토에 파시즘을 합성해서 만든 신조어이다. 하시모토는 오사카유신회(大阪維新の会)라는 지역 정당을 구성하여 지난 3월26일 제1기 「維新政治塾」를 개강하였다. 참가자 수만 2,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이례적인 국민적 관심에 기존 정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도 있다. 게다가 일본 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의 노골적인 가시화는 전후 일본사회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재평가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하고 있었던 초기의 외교적 태도와는 일변된 모습으로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처럼 최근 일본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대외 정책과 하시즘의 일례에 보이는 이례적인 국민적 관심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고 있는 일본의 장기적인 불황의 지속, 거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현상타파를 위한 일시적이고 굴절된 반응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근대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역사인식이 21세기와 더불어 극히 우익적인 성향으로 변용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고찰은 동북아시아의 근대인식이란 공통적 역사상에 대한 변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고찰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근대사 인식에 보이는 변용은 집단적 기억의 형성이 해당공동체의 신념에 의해 재구성된다는 기억이론을 대입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프랑스의 역사 사회학자인 모리스 알브박스(Maurice Halbwachs)가 ‘역사가 어떤 사회적 인식과정에 의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집단적 기억이란 용어로서 설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오경환은 ‘(역사들)기억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지만 기억하는 행위 자체는 사회적인 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정치적, 사회적 메커니즘에 따라 변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²⁾. 이점에서 재일중국인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리잉이 만든 『야스쿠니』라는 영화는 대단히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는 동아시아 3국의 역사와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천황제파시즘에 대한 일본의 근대사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문화학자 안 아스만이 ‘모든 집단적(사회적) 기억은 문화적 표상에 의해 전승 된다’라고 말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이란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근대사의 표상으로서 해당공동체인 일본사회의 집단적 기억을 전승하게 되는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문화적 표상으로서 집단적 기억을 전승할 수 있게 만드는 메커니즘 속에 ‘천황제’라고 하는 일본의 정체(政體)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근대천황제가 일본의 근대이행기 속에서 창출된 제도로 ‘국체(國體)’ 로까지 불렀던 것은, 그 이면에 일본의 아이덴티티, 즉 일본적 정체성이 천황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2) <http://d.hatena.ne.jp/keyword/%CA%BF%CF%C2%A5%DC%A5%B1>, 「主に、戦争や平和、安全保障などの現実について無関心であったり、現実から乖離した理想論などが生み出す状況、行動、考えなどを罵倒・嘲笑する際に用いられる」(주로 전쟁이나 평화, 안전보장 등의 현실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현실로부터 괴리된 이상론 등이 만들어 낸 상황, 행동, 생각 등을 매도, 조소할 경우에 사용된다).

3) 오경환(2007) 「집단기억과 역사」 『亞太쟁점과 연구』 가을호, pp.86-87

게다가 쇼와천황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절대군주에서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변용될 수 있었던 것은, 전후 GHQ의 주장이었던 맥아더가 이러한 일본적 정체성의 결정체인 ‘천황(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전후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일본국헌법에 의해 일본의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로서 규정되어진다. 비록 전전의 천황이 지니고 있었던 절대적 권한(천황대권)을 억제하고 국민통합의 상징적인 존재로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쇼와헌법이 대일본제국헌법을 계승한 형태로 일본국헌법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은 음미해 볼 부분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역사는 집단적 기억의 전승을 통해 정착되어진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일본의 근대사 인식에는 전후에 새롭게 규정된 상징천황제에 내재된 폐해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점에서 본고는 동아시아로서 일본근대사가 보이고 있는 역사인식의 왜곡과 네오내셔널리즘으로 상징되는 우익세력이 횡행하게 되는 이면에 전후의 상징천황제가 지니고 있는 폐해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는 앞의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 정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로서의 상징천황제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논증하는 것은 자국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동아시아 속의 근대사로서 일본의 근현대사의 시점을 수정하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이는 현대사의 여러 쟁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후 일본의 상징천황제가 전전의 근대천황제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천황제가 어떤 역사적 메카니즘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억의 전승을 통해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가 담보하고 있는 일본사회의 집단적 기억이 어떤 본질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급해 가고자 한다. 참고로 상징천황제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 대한 정리와 비판은 논지에 따라 본문 속에서 다루어 가는 것으로 하겠다.

2. 일본국헌법에 보이는 근대천황제의 변용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는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된 일본국헌법⁴⁾이 그 기능을 담보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강한 상징천황제가 일견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게

4) 참고로 헌법의 시행은 1947년 5월 3일로 되어있다.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쇼와헌법 혹은 평화헌법으로 부르고 있는 일본국헌법은, 전전의 대일본제국헌법과의 차별성을 천황에 대한 규정에서 찾고 있다. 즉 천황에 대한 조항이 절대적 대권에서 상징주의의 표상으로 그 성격이 변용되었다는 점에서 양 헌법의 본질적인 차이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국헌법은 서문에서 「짐은, 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하여, 신일본건설의 초석이 정해지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깊이 기뻐하고, 추밀원 고문의 자문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의회의 결의를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여기에 이것을 공포한다)」라고 헌법 공포에 관한 취지를 천황의 이름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대일본제국헌법이 천황의 이름으로 흙정헌법의 형식으로 공포되었던 것과 이미 그 형식이 다르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헌법을 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국헌법의 조항 구성은 대일본제국헌법의 조항 구성 틀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일본국헌법이 태생부터 전전의 대일본제국헌법의 계승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앞선 줄고⁵⁾ 속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천황에 대한 규정이 ‘대일본제국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국헌법’ 속에서도 여전히 제1장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비록 형식만을 계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깊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국 국민을 주권자로 상징하고 있는 일본국헌법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으로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이고 이 지위는 주권이 존재하는 일본국민의 총의에 기인한다)」라는 의미적 모순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천황은 주권자에 해당하는 <일본국의 국민>보다 앞선 위치에 규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는 일견 모든 정치적 권한을 박탈당한 듯이 보이지만, GHQ는 새 헌법을 통해 국가의 이름으로 게다가 국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하는 최고의 위치에서 천황의 존재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의 일본국헌법은 제2장에서 <전쟁의 포기>를 그리고 제3장에 이르러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다. 소위 <국민국가>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현대일본의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일본국헌법의 서술 순서는 위화감을 느끼게 만든다. 물론 앞서

5) 원문은 「朕は、日本国民の総意に基いて、新日本建設の礎が、定まるに至ったことを、深くよろこび、枢密顧問の諮詢及び帝国憲法第七十三条による帝国議会の議決を経た帝国憲法の改正を裁可し、ここにこれを公布せしめる(하선은 인용자)(家永三郎, 『歴史の中の憲法』下, p.792)라고 되어 있다. 덧붙여 하선부의 제국헌법 제73조는 「第七三条 将来此ノ憲法ノ条項ヲ改正スルノ必要アルトキハ勅命ヲ以テ議案ヲ帝国議會ノ議ニ付スヘシ 此ノ場合ニ於テ兩議院ハ各々其ノ総員三分ノ二以上出席スルニ非サレハ議事ヲ開クコトヲ得ス出席議院三分ノ二以上ノ多数ヲ得ルニ非サレハ改正ノ議決ヲ為スコトヲ得ス」(家永三郎, 앞의 책 같은 페이지)로 되어 있다.

6) 손정권(2010.11) 「근대천황제 인식논리와 역사인식의 현재」 『일본근대학연구』 제30집

7) 원문은 「天皇は、日本国の象徴であり日本国民統合の象徴であつて、この地位は、主権の存する日本国民の総意に基く」로 되어있다(家永三郎, 같은 책, p.794)

지적인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은 일본국헌법이 대일본제국헌법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런지도 모른다. 즉 대일본제국헌법의 형식을 기본 틀로 하여 새로운 헌법조항이 서술되었기에 제1장에 천황의 조항이 들어오는 것은 필연적 결과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천황 및 일본정부의 국가통치권한은 연합국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귀관에 종속한다⁸⁾」라고 맥아더가 행한 일본통치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본 통치에 있어서 절대적 권한을 부여받은 맥아더가 「일본이 다시 미국의 위협이 되고 또는 평화 및 안전의 위협이 되지 않게 될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⁹⁾」을 일본통치의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의 대일본개조방침의 의도가 일본의 스위스화 즉, 영세중립국가화에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의 천황제파시즘을 가능하게 했던 천황의 존재를 새로운 일본 국가구상에서 제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으며, 천황이 없는 국민국가구상이 당연한 귀결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구상 하에 전전의 천황제 파시즘을 담보했던 대일본제국헌법에 대한 개정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다각화되었던 것이다. 그럼 헌법 개정 논의는 어떻게 추진되었을까? 여기에 대해 개략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전부터 천황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일본공산당은 「주권은 인민에 있다¹⁰⁾」고 제1 조에서 규정하는 신헌법의 골자를 공표함으로써 전전의 헌법과 차별화한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일본공산당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일본에 천황의 존재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다카노 이와사부로(高野岩三郎)의 발기에 의해 결성된 민간의 헌법연구회가 제시하고 있는 「헌법초안요강」도 국민에 대한 조항이 천황에 대한 규정보다 먼저 기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초안요강은 「일본국의 통치권은 일본국민으로 나온다¹¹⁾」고 주권을 규정하면서 천황은 「국민의 위임에 의해 오로지 국가적 의례를 관장¹²⁾」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게다가 천황의 즉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전의 천황의 위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다카노 이와사부로는 「개정헌법사안요강」에서 헌법의 근본원칙으로 「천 황제를 대신하여 대통령을 원수로 하는 공화제의 채용¹³⁾」을 주장한다. 그러나 하토야마 이치

8) 원문은 「天皇及び日本政府の國家統治の權限は、聯合國最高司令官としての貴官に從屬する」이다. 『史料日本近現代史』Ⅲ, 三省堂, 1985, p.4
 9) 원문은 「日本國が再び米國ノ脅威トナリ又ハ世界ノ平和及安全ノ脅威トナラザルコトヲ確實ニスルコト」이다. 『史料日本近現代史』Ⅲ, 三省堂, 1985, p.5
 10) 원문은 「主權は人民に在り」이다. 『史料日本近現代史』Ⅲ, 三省堂, 1985, p.29
 11) 원문은 「日本國ノ統治權ハ日本國民ヨリ發ス」이다. 『史料日本近現代史』Ⅲ, 三省堂, 1985, p.29
 12) 원문은 「天皇ハ國民ノ委任ニヨリ專ラ國家的儀禮ヲ司ル」이다. 『史料日本近現代史』Ⅲ, 三省堂, 1985, p.29

로(鳩山一郎),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등이 중심이 된 일본자유당이 내 건 「헌법개정요강」에 이르면 천황에 대한 당시의 지배층의 생각이 전전과 다름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료1>일본자유당(日本自由党) 「헌법개정요강」

1946년1월21일

일, 천 황

1. ①통치권의 주체는 일본국가이다
2. ②천황은 통치권의 총람자이다
3. ③천황은 만세일계이다
4. ④천황은 법률상 및 정치상의 책임이 없다

이, 소위 천황대권 사항

좌기 각항 그 밖의 천황의 이름으로 하는 국무는 모두 국무대신의 보필에 의한다.

1. 법률의 제가 및 공포
2. 의회의 소집, 개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
3. 관리의 임면(任免)
4. 외교
5. 영전의 수여
6. 사면(恩赦)

(주) ⑤현행헌법(대일본제국헌법을 의미한다-인용자)에 있어서의 긴급명령, 독립명령제정의 대권, 관제(官制)대권, 통수대권, 편제대권, 계엄대권, 비상대권은 이를 폐지한다

(하략, 밑줄 및 ①②③④⑤는 인용자)¹⁴⁾

사료를 통해, 당시 일본의 정치인(하토야마는 일본의 52,53,54대 내각총리대신, 요시다는 45,48,49,50대 내각총리를 역임한 자이다)들의 의식 속에는 천황이 여전히 통치권의 총람자로 살아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밑줄 친 ①②③④는 천황에 대한 전후 일본의 정치인들의 의식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주의를 필요로 한다. 전전의 천황제파시즘과의 단절을 의중에 갖고 있던 GHQ의 의도와 달리 새 일본을 창출해야 할 지배층은 비록 밑줄 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석을 통해 전전의 천황대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음미해 보면 여전히 절대적인 천황상(天皇像)을 추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천황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에 깊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천황상 형성에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13) 원문은 「天皇制二代ヘテ大統領ヲ元首トスル共和制ノ採用」이다. 『史料日本近現代史』Ⅲ, 三省堂, 1985, p.32

14) 日本自由党「憲法改正要綱」, 1946.1.21. 『史料日本近現代史』Ⅲ, 三省堂, 1985, pp.33-34

<사료2>정부의 헌법문제 조사위원회 「헌법개정요강」(소위 갑안) 1946년 2월 8일

제1 천 황

일, ①천황은 지존으로 침범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할 것(제3조 개정)

이, 중의원의 해산은 동일사유에 근거하여(중략)

사, ②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또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게 하는 것으로 할 것(제9조 본문개정)

오, ③천황은 군을 통수하는 것으로 할 것(제11조 개정)

(중략)

팔, 천황은 영전을 수여하는 것으로 할 것(제15조 개정)

제2 신민권리의무

구, ④일본신민은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노역에 따를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할 것(第二十条改正)

(中略)

삼십육, ⑤천황은 제국의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을 제가하여 그 사실의 공포 및 집행을 명하는 것으로 할 것 (하략, 밑줄 및 ①②③④⑤는 인용자¹⁵⁾)

사료2는 맥아더로부터 대일본제국헌법의 발본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시를 받게 된幣原내각이 당시의 松本국무대신을 위원장으로 설치했던 헌법문제조사위원회가 제안한 헌법 초안이다. 헌법 개정애 소극적이었던 당시의 내각은 소위 「松本四原則」을 내걸고 초안 작업에 들어갔었다. 헌법 개정애 있어서 4원칙이란, 1)천황이 통치권을 총괄한다는 명치헌법의 기본 원칙을 변경하지 않는다 2)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확대한다 3)국무대신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4)인민의 권리, 자유의 보호를 확대한다, 고 하는 내용의 4가지 원칙이다. 주목할 것은 헌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명치헌법(대일본제국헌법)의 원칙을 계승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일본제국헌법을 원칙으로 하면 당연히 천황은 통치권을 총괄하게 되는 것이고, 천황이 총괄자가 된다는 것은 일본 국민의 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본국민의 자리에는 여전히 천황의 신하, 일본 신민이 자리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천황의 백성이 일본국민의 자리를 대신하는 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국민국가’는 요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밖에 전시중의 대일본정치의회의 의원들을 모아 제1당으로 성립한 진보당은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당시의 공산당부터 자유당에 이르기까지 천황제와 관련한 천황론을 비판하고 극단적인 절대주의 천황제의 호지(護持)를 주장한다.

15) 「憲法改正要綱」, 1946.2.8. 『史料日本近現代史』Ⅲ, 三省堂, 1985, pp.35-36

<자료3>일본진보당(日本進歩党) 「헌법개정문제」

제1 방 침

일본진보당은 입당초 그 강령의 첫째로 「①국체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철저히 하여, 의회중심의 책임정치를 확립한다」고 선언했다. 우리 당의 주장이 ②천황제호지에 있는 것은 극히 명백하다. 단 세계2차 대전에 있어서 처니황 보필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자가 선전(宣戰)대권의 운용을 잘못된 결과, 패전의 참상을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를 돌아보고 장래를 경계하여 이러한 종류의 비위를 굳게 예방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여 의회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고, 대권의 운용에 의회를 관여하게 하고, 이로써 민주주의를 철저히 하여(중략)군주정체(君主政體)와 민주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논의하였으나, ③군주정체 하에 있더라도 민의를 기초로 하는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로써 (하략, 밑줄 및 ①②③은 인용자)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진보당의 경우는 천황제호지를 기본 방침으로 민주주의 정치의 이념마저 재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밑줄 ①부분의 <국체>란 전전 일본에 있어서 <천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밑줄 ②부분에서 천황제를 이어가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밑줄 ③부분에 이르러서는 군주정치라 할지라도 민의를 기초로 하게 되면 민주주의 정치에 해당한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으면서까지 전전의 천황제를 극단적으로 수용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구성된 헌법개정안은 그 내용을 일일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전전의 천황제를 계승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후 헌법 개정을 둘러싸고 전개된 천황제에 대한 논의는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천황제를 계승할 것인가 아니면 천황제의 성격을 전환할 것인가’라는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천황제의 완전폐지를 헌법 개정을 통해 실현하려는 모습은 어떤 개정 논의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1946년 2월13일 GHQ가 「헌법개정요강」을 거부하고 맥아더의 「일본국헌법초안」을 건네주는 것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4> 맥아더의 일본국헌법초안

1946년 2월 13일

우리를 일본국 인민은, 국민의회에 있어서 정당하게 선거를 치른 우리들의 대표자를 통해서 행동하고, 우리들 자신 및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 및 이 나라 전 국토에 이르는 자유의 축복의 성과를 확보할 결심을 하고, 또 정부의 행위에 의해 행사되어져, 이리하여 그 이익은 인민에 의해 재차 전쟁의 공포와 위협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결심하여, 여기에 ①인민의 의사의 주권을 선언하고, 국정은 그 권능은 인민으로부터 받아 그 권력은 인민의 대표자에 의해 행사되고 이리하여 그 권익은 인민에 의해 하○유되어지는 신성한 신탁으로 되는 보편적 원칙

위에 성립되어지는 ②이 헌법, 명령, 법률 및 소칙을 배척 및 폐지한다

(중략, 밑줄 및 ①②는 인용자6)

맥아더의 헌법초안은 밑줄 ①에서 국민이 주권자임을, 밑줄 ②에서 천황의 정치적 권한을 철저히 배제할 의지를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의지는 헌법 제1장 제1조에 이르러 「황제(천황을 의미-인용자)는 국가의 상징으로서 또 인민 통일의 상징으로 해야 한다. 그는 그 지위를 인민의 주권적 의사로부터 받아 이것을 다른 어떤 원천으로부터도 받지 않는다7)」고 하여 기본적으로 당시의 정치권에서 획득하려고 했던 천황에 대한 권한에 제한적 입장을 분명히 나타낸다. 이러한 방침은 극동위원회가 작성한 「일본의 신헌법에 관한 기본원칙」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사료5>

일, 일본국헌법은, ①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중략)

이, 일본에 있어서 정치의 최종 형태는, 일본국민의 자유롭게 표명된 의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②천황제를 현재의 헌법상의 형태로 보지(保持)하는 것은(중략)합치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국민에 대해, ③천황제를 폐지하든지, 또는 그것을 한층 민주적인 선에 따라 개혁하도록 장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삼, 만약 일본국민이, 천황제는 지켜야 할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면, 그 제도가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헌법상의 보증은, 명확하게 필요하지는 않지만(하략, 밑줄 및 ①②③은 인용자8))

-
- 16) 「マッカーサーの日本国憲法草案」, 1946.2.13. 『史料日本近現代史』Ⅲ、三省堂、1985、p41. 원문의 내용을 한국어로 고치면 「우리를 일본국민은 국민의회에 있어서 정당하게 선거된 우리들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 자신 및 우리들의 지손을 위해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 및 이 나라 전도에 이르는 자유의 축복의 성과를 확보할 결심을 하고, 또 정부의 행위에 의해 행사되어져 그 이익은 인민에 의해 다시 전쟁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결심하여, 여기에 인민 의사의 주권을 선언하고, 국정은 그 권능은 인민으로부터 받고 그 권력은 인민의 대표자에 의해 행사되어져 그 이익은 인민에 의해 향유되어지는 신성한 신탁이 되는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는 것의, 이 헌법, 명령, 법률 및 소칙을 배척 및 폐지한다이다
 - 17) 원문은 「皇帝ハ国家ノ象徴ニシテ又人民ノ統一ノ象徴タルヘシ 彼ハ其ノ地位ヲ人民ノ主權的意思ヨリ承ケ之ヲ他ノ如何ナル源泉ヨリモ承ケス」이다. 「マッカーサーの日本国憲法草案」, 1946.2.13. 『史料日本近現代史』Ⅲ、三省堂、1985、p.41
 - 18) 「日本の新憲法についての基本原則」, 極東委員会, 1946.7.2. 『史料日本近現代史』Ⅲ、三省堂、1985、p49. 참고로 사료의 내용을 한국어로 고치면 「일, 일본국헌법은 주권이 국민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일본에 있어서의 정치의 최종형태는 일본국민의 자유로 표명된 의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천황제를 현재 헌법상의 형태에 있어서 유지하는 것은(중략)합치되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국민에 대해 천황제를 폐지하든지 또는 그것을 한층 민주적인 선에 입각해서 개혁하도록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삼, 만약 일본국민이 천황제는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그 제도가 폐해를 미치지 않기 위한 헌법상의 보증은, 명확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하략)가 된다.

밑줄 ①②③을 확인해 보면 당시의 GHQ가 일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가 잘 드러나 있다. 특히 밑줄 ③의 경우는 천황제의 폐지마저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전진의 천황제를 단절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료에 대한 역사과학협회의 주석을 참고하면, 일본국헌법의 성립에 맥아더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맥아더는 성명을 통해 헌법 개정의 3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1)헌법조문의 철저한 심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고 2)심의 수속이 메이지헌법과의 완전한 법적계속성을 보증하고, 3)헌법채택의 방법이 일본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할 것, 등의 세 가지이다. 그리고 이 결정은 같은 해 5월 13일에 있었던 극동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그만큼 직접적으로 헌법에 관여된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결정은 새로이 개정되는 일본국헌법에 있어서 천황제 관련사항이 점령군과 점령정책에 있어서 얼마만큼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결국 맥아더 초안이 바탕이 되어 성립하게 되는 일본국헌법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근대천황제를 변용된 채 존속시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의를 수렴하여 헌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GHQ의 선택은 역사적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용된 형태의 제도를 존속하게 만들었고, 모든 제도는 그 자체가 형식이라 할지라도 의례가 수반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로 정착되는 ‘기억의 전승’은 형식과 의례에 의해 전승되어지는 것이며, 이렇게 전승되어지는 기억은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천황을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맥아더의 선택은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었지만, 근대사를 가로질러 현대를 관통하는 역사의 긴 안목에서 보면 조금은 성급한 선택이 아니었었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3. 상징천황제의 전승이 지닌 역사적 의미

‘상징’이란 무엇인가. ‘상징’이란 「사물을 전달하는 매개적 작용을 하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백과사전은 정의하고 있다¹⁹⁾. 여기서 일본국헌법에 명기한 상징천황제의 성격과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일본의 상징천황제를 재해석해보기로 하자. 일본국헌법은 제1조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니고 있는 일본국

19) <http://100naver.com/100.nhn?docid=87633> 참조

민의 총의에 근거한다²⁰⁾」라고 천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기술에 따르면 천황이란 「일본국」을 상징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국민의 통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상징’이 지니고 있는 사전적 의미에 근거해서 해석을 덧붙이면 일본의 천황은 「일본국의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임과 동시에 「일본국민의 통합을 전달」하는 매개체적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황=일본>이라는 극단적인 해석의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때문에 천황을 일본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석하는 것에도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래 <신화>에는 신화를 매개로 하는 집단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어, <신화>를 통해 해당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점에서 생각해 보면 <일본신화>를 계승하고 있는 천황이 일본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하는 논리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점, 즉 일본의 천황이 <신화>적 정체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논리가 근현대 일본의 역사 속에서 ‘상징천황제’에 내재한 문제의 소재가 된다는 것이다.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물론 정체성을 정의하기에는 <정체성>이 너무나 다의적 개념을 지닌 용어라 난해할 수 있지만 지극히 단순화하여 풀이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이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요소’로 이해할 수 있으며, 집단의 정체성은 ‘타국과의 관계설정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점 때문에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는 ‘일본국, 일본국민의 기억을 담보하는 장치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서 상징천황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정정숙이 21세기 일본의 아이덴티티로 천황제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정정숙의 경우는 일본의 통합적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천황제가 핵심적인 주요 도구로 사용될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평화헌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천황제의 역할이 정말로 한정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평화헌법 조항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는 연구의 한계성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²¹⁾. 실제로 일본의 근대천황제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박진우의 연구가 특히 참고가 되는데 최근의 그의 논의를 보면 상징천황제가 일본문화의 아이콘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상징천황제의 존속이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인식의 문제로서 나아가 일본사회가 국제화될 수 없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진우는 그 근거로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20) 원문은, 「天皇は、日本国の象徴であり日本国民統合の象徴であって、此の地位は、主権の存する日本国民の総意に基く」이다.

21) 정정숙(2000) 「21세기 일본의 아이덴티티와 천황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5집, pp.93-94

새로운 기억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으며, 그의 이러한 인식은 동경대 교수인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와의 대담 속에서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정신구조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현대 상징천황제는 전전의 근대천황제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일본의 지식인으로부터 확인해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에 대한 박진우의 기본적인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으며 본 연구와 상징천황제에 대한 인식 면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스탠스(stance)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²⁾.

그럼,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내재하고 있을까?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상징천황제가 일본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에서 전개되었고, 이를 추진한 GHQ 역시 상징천황제가 일본의 근대사인식을 왜곡하게 되는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문제는 헌법으로 규정한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국민의 통합」이 실제로 <천황>을 매개로하여 실현되어 가는 현실에 있다. 기억의 사회성, 집단성에 착목한 모리스 알브박스가 기억하는 주체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행위 자체는 사회적인 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사회적 기억’의 개념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일본의 ‘상징천황제’에 내재한 문제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억이란 인간의 의식 속에서 보편화 되어있는 이미지가 형상화된 것이기 때문에 ‘상징’은 기억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³⁾. 일본인들의 <천황가>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즉 호감도 조사결과를 보면 1973년에 20%에 불과했던 천황(가)에 대한 호감도가 2003년에 41%의 호감을 나타낸 것²⁴⁾은 천황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회적 기억’의 재구성이 가져온 결과의 한 단면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전의 절대군주 쇼와천황이 전후에 평화를 실천하는 자애의 군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기억이 또는 집단의 기억이 기본적으로 망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망각이 성립한 기억은 해당공동체(집단)의 신념에 의해 새로운 기억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 모리스 알브박스가 설명하는 ‘사회적 기억’의 특징이며, 이점에서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새로운 기억에 의해 재구성된 기억의 공동체를 매개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쇼와천황의 죽음과 더불어 천황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후쿠토미(福富節男)는 「...천황제를 전전의 것, 전후의 것으로 단절하는 면을 취하는 것 보다, 법적 형태의 차이를

22) 박진우 편저(2006) 『21세기 천황제와 일본』 논형, pp.122-155

23) 모리스 알브박스의 ‘사회적 기억’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은, 오경환(2007)의 앞의 논문을 참고로 요약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4) 『現代日本人の意識構造第六版』, NHKブックス, 2004, 정형(2009) 『일본, 일본인, 일본문화』 다락원, p.93에서 재인용

넘어 오히려 전전, 전후의 연속성에 관한 인식의 대중화를 추진하는 것(중략)반전, 평화=호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등식을 깨기 시작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 즉 상징천황제의 애매함과 수상쩍음에 대한 인식, 나아가 그것을 넘어 상징천황제가 민주주의와 서로 융합될 수 없는 것, 차별의 근원적 존재인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 된 것(하략)²⁵⁾이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 천황제폐지운동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특히 상징천황제에 대해 「전전, 전후의 연속성」이 문제의 핵심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은 <천황제>의 존속이 역사의 순기능에 역류하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천황제가 존속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궁내청과 내각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는 것, 그것에 대해 야당의 격렬한 반대가 없는 것, 이익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빼내는 매스컴이 스스로를 통제하여 입을 닫아 버리는 것, 그 결과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하 생략)²⁶⁾」이라고 나카야마(中山千夏)는 지적한다. 나카야마의 지적은 쇼와천황의 죽음과 관련한 지적이지만, 단순히 당시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는 현대일본의 천황제와 관련한 일반적인 태도에 관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쇼와천황을 계승한 현재의 헤이세이 천황의 노환과 관련된 병세에 관한 최근의 일본 언론의 태도는 일찍이 나카야마가 지적한 것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주목할 사실일 것이다.

그럼 상징천황제는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현대의 상징천황제는 일본국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천황, 천황제와 관련한 사항은 GHQ에 의해 조율되었다. 일본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징천황제의 담당자인 천황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천황가, 즉 황실에 의해 계승된다. 그렇기에 입헌군주제의 형식을 띤 근대천황제도 황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두었으며, 현대의 상징천황제 역시 일본국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규정되어져 있다. 흔히 천황가의 법률로 알려져 있는 『皇室典範²⁷⁾』은 일본국헌법 제2조와 5조의 규정에 근거해 황위 계승과 섭정 등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법률로 정해 둔 것이다. 황위계승과 관련한 내용을

25) 원문은 「(前略)天皇制を戦前のもの、戦後のものと断絶する面をとらえていくより、法的形態の差をこえて、むしろ戦前、戦後の連続性についての認識の大衆化を進めたこと(中略)反戦・平和=護憲と考えていた人びとの中から、この等式を打ち切る傾向が生まれたこと。つまり象徴天皇制のあいまさとうさんくささの認識、さらにそれを越えて、象徴天皇制が民主主義と相い容れないものであること、差別の根源的存在であることの認識が広がったことである」이다. 福富節男의 공저, 『天皇制なんかいい!』新地平社, p.5

26) 원문은 「(前略)宮内庁や内閣が何もかもを秘密にすること、それに対して野党の激しい反抗がないこと、儲かりさえすれば何でもスッパ抜くはずのマスコミが自らを統制して口を噤んでしまうこと、その結果、私たちには何も見えないこと(下略)」, 中山千夏, 「天皇制と国家儀式」, 福富節男의 공저, 『天皇制なんかいい!』新地平社所収, pp.16-17

27) 황실전범은 1889년 2월11일에 대일본제국헌법과 함께 제정(裁定)되었으며 1947년 일본국헌법시행에 즈음하여 추밀원의 자문과 제국회의의 협찬을 거쳐 현재의 황실전범(1947년 1월16일)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황실전범은 폐지되었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1> 『황실전범』

제1조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가, 이를 계승한다.

제2조 황위는, 좌기의 순서에 의해, 황족에게, 이를 전한다.

일 황장자(皇長子)

이 황장손(皇長孫)

삼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사 황차자(皇次子) 및 그 자손

오 그 밖의 황자손

육 황형제 및 그 자손

칠 황백·숙부 및 그 자손

전 항 각호의 황족이 없을 때는, 황위는 그 이상에서 가장 근친의 계통의 황족에게 이를 전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장자계를 우선하고, 동등한 계층 안에서는 장자를 우선한다(하락²⁸⁾).

밑줄 부분에서 천황제의 가부장적 색채를 읽을 수 있으며, ‘천황제’에는 여전히 남녀차별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남녀차별에 대한 의식은, 황족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규정인 『황실전범』 제15조의 조항 즉, 「황족 이외의 사람 및 그 자손은, 여자가 황후로 되는 경우 및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족으로 될 수 없다²⁹⁾」라고 하는 조문에서 명백히 확인하게 된다.

<자료2> 『황실전범』

제23조 천황, 황후, 태황태후 및 황태후의 경칭은, 폐하로 한다.

전항의 황족 이외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로 한다.

제24조 황위의 계승이 있을 때는 ①즉위의례를 행한다.

제25조 천황이 붕어했을 때는 ②대상의례를 행한다.

제26조 천황 및 황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황통보에 등록한다.

제27조 천황, 황후, 태황태후 및 황태후의 묘를 릉, 그 밖의 황족은 묘라 칭하고, 릉 및 묘에 관한 사항은, 이를 릉적(陵籍) 및 묘적(墓籍)에 등록한다³⁰⁾.

28) <http://ja.wikisource.org/wiki/%E7%9A%87%E5%AE%A4%E5%85%B8%E7%AF%84#s1>

29) <http://ja.wikisource.org/wiki/%E7%9A%87%E5%AE%A4%E5%85%B8%E7%AF%84#s1>

원문은 「皇族以外の者及びその子孫は、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及び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を除いては、皇族となることがない」이다.

30) 註29와 동일함.

‘천황가(天皇家)’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더해, 그 내용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천황>이 일본, 일본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2>의 ①에 명기한 ‘즉위의 의식’이란 황위를 계승한 사실을 내외에 공표하는 대관식의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즉위의 의식이 끝나면 새롭게 즉위한 천황은 이듬해에 대상제(大嘗祭)³¹⁾을 행하게 되는데 현재의 헤이세이 천황의 경우, 이 의식을 1990년 11월22일 심야에서 11월23일의 미명에 걸쳐 행하였다.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현 천황의 大嘗祭를 둘러싼 위헌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쇼와천황의 장의와 함께 새롭게 규정된 <자료2>의 ②에 언급된 ‘장례의 의식’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종교의 중립성에서 위헌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 때문에 천황의 장의는 특정한 종교의 의식이 아니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일본정부가 스스로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설정하고 있는 천황의 장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도리어 스스로가 위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위헌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대이전의 일본사 속에서의 천황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존재였다. 나카야마의 경우, 상징천황제가 지니고 있는 폐해의 한가지로 일본인 스스로가 천황의 상징성에 매몰되어버리는 이유를 천황이 지니고 있는 전통적인 종교적 색채에서 찾고 있다. 그만큼 「종교성을 빼버린 천황에게 「상징」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을까³²⁾」라고 반문하는 나카야마의 논리는 설득력을 지닌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한 천황을 둘러싼 의식의 전승은 비록 두 차례의 헌법 속에서 각각의 해석을 통해 의례의 대소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본역사 속에서 ‘천황’이 담당하고 있었던 고유한 일본문화 그 자체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천황은 전통적으로 祭와 政를 겸비했던 존재이고, 그 역할은 현재에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 이점이 바로 천황, 천황가가 창출해내는 독특한 가치체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일본의 천황은 일본국민의 통합을 매개하는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전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기억을 전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1) 천황이 즉위의 의식 후 처음 행하는 新嘗祭를 특별히 부르는 말. 일대에 단 한 번 있는 큰 의식으로 실질적인 즉위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踐祚大嘗祭라고도 부른다. 이외에도 「おおなめのまつり」「だいじょうさい」「おおむべのまつり」라고 부른다. 大嘗祭는 천황의 계승에 있어서 불가결한 의례일 수 있지만, 현대 상징천황제의 성립과정과 그 의미를 생각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례일 수 밖에 없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4절에서 재차 언급하기로 하겠다.

32) 나카야마 치나쓰, 앞의 책, p21, 나카야마는 덧붙여 「思えば、文化的意義、伝統的意義から確実な歴史を顧みれば、日本にとって天皇家の価値が徳川家より上だとは思えない。唯一、前者には神がついているという点で、その価値を高く錯覚されてきた」라고 하여, ‘천황’의 상징성이 담보하고 있는 것이 종교적 의례라는 것을 강조한다.

4. 기억공동체로서의 상징천황제

집단적 기억의 문제를 문화적 측면에서 재해석한 독일의 인류문화학자 얀 아스만(Jan Assmann)은 「개개인들은 공동의 규칙과 가치에 구속되어 있고 또한 과거에 대한 공통적인 기억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개개인들은 공동의 지식과 공동의 자아상을 갖게 된다³³⁾」고 설명한다. 모리스 알브박스의 ‘사회적(집단적) 기억’이나 얀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은 우리가 소속된 집단속에서 공동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단, 모리스 알브박스는 공동의 기억의 형태를 사회적 틀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얀 아스만은 공동의 기억은 공동의 생활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기억은 문화로 귀결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얀 아스만이 주목하여 설명하는 기억 이론에 종교적의식이 현재화된 기억의 문화라는 설명의 방정식이 있다는 것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일본의 상징천황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참고가 된다. 앞 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현대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제도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전술한바와 같이 천황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전전의 군국주의적 천황제가 전후의 상징천황제로 단절 없이 계승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는 당연히 단절되었어야 할 제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졌기에 ‘성단’의 신화가 만들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집단적 기억’을 재구성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독일과 달리 전쟁에 대한 전후의 역사반성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여기에 독일과 이질적인 일본의 구조적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적 기억과 관련하여 「기억은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기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의 전거(frame of reference)에 맞추어 재구성하려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다³⁴⁾」라고 하는 얀 아스만의 설명은, 일본의 ‘상징천황제’의 속성을 지적하고 있는 경구처럼 들려 흥미롭다. 이 점에서 박진우가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를 기억의 공동체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천황제에 대한 적절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억의 공동체’가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집단적으로 망각해 가는 과정(중략) 국가적인 의례과정을 통하여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³⁵⁾」고 지적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박진우가 지적하고

33) 얀아스만의 ‘문화적기억’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고규진의 연구를 참고로 하고 있다. 고규진(2003) 「문화적 기억과 문확정전-그리스의 문자문화와 호머의 정전화 과정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제22집, p.238

34) 오경환(2007), 앞의 책, p.98

있는 의례의 하나에 3절에서 언급한 大嘗祭가 있다. 大嘗祭는 천황의 즉위와 함께 행해지는 공식적인 의례로 현 천황인 아키히토(明仁) 역시 통과의례로 행하였었다. 문제는 大嘗祭와 관련해서 당시의 언론이 「새로운 천황이 그 해에 수확된 새 곡식을 황조에게 바치고, 스스로도 신(神)들과 대좌하여 먹음으로써 신격을 획득한다고 되어져 있는 의식. 대상제를 행하지 않은 천황은 「반제」라고 불렸다(밑줄은 인용자)³⁵⁾」라고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교분리가 원칙인 일본국헌법의 스탠스(stance)에서 생각해 보면 확실히 위헌에 해당하는 해설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천황은 ‘신격’이 아니라 ‘국민의 총의’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천황은 종교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 색채를 띤 채 일본국민이 보장하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획득하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여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생각하면 ‘천황이 신격을 획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고 신격의 획득이란 부여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군주제를 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행해지는 대관식은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 ‘관’을 수여받게 된다. 여기에 비해 일본의 천황은 신들과 함께 자리하여 새 곡식을 먹는 의례를 통해 스스로 ‘신격(관)’을 획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스스로 ‘신격’을 획득하여 ‘현인신’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일본의 ‘천황제’에 내재되어 있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이 메커니즘은 결과적으로 천황, 천황제에 대한 절대성을 부여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상징천황제’는 절대군주제의 바뀐 이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남경대학살이랑 「중군위안부」라고 하는 구일본군의 전쟁범죄는, 일본인에게 죄악감을 심어주기 위한 동경재판이래 계속되어 온 프로파간다(국가적 선동의 의미-인용자)의 산물이고 수상의 야스쿠니 공식 참배랑 자립된 국방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과 한국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³⁷⁾」 「치안악화의 원인인 외국인(“재일”)을 포함한다)범죄랑 납치문제에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아시아』의 앞잡이인 아사히, 이와나미, NHK라고 하는 미디어, “기미가요・히노마루”에 반대하는 일교조 등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³⁸⁾」라고 하는 사이버커

35) 박진우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과 상징천황제」『동아시아 민족국가들의 역사인식과 그 갈등』, p.158

36) 원문은 「新天皇がその年に収穫された新穀を皇祖にそなえ、自らも神々と対座して食することによって、神格を得るとされている儀式。大嘗祭を行わない天皇は「半帝」と呼ばれた」이다. 戸村政博, 「大喪の礼から即位・大嘗祭へ」, 福富節男의 공저, 『天皇制なんかいらない!』新地平社所収, p.27

37) 원문은 「南京大虐殺や「従軍慰安婦」といった旧日本軍の戦争犯罪は、日本人に罪悪感を植えつけるため東京裁判以来続けられてきたプロパガンダの産物であり、首相の靖国公式参拝や自立した国防を阻止するために中国や韓国によって利用されている」이다. 能川元一(2009) 「若者に根付く「民族排外主義」の牙が向かう先」, 『週間金曜日』749号, 5. p.27

38) 원문은 「治安悪化の原因である外国人(“在日”を含む)犯罪や拉致問題には断固たる態度をとるべきであるのに、『特定アジア』の手先である朝日・岩波・NHKといったメディア、“君が代・日の丸”に反対す

뮤니티 「2채널」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우익」의 확산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민족배제주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정적 확산을 보이고 있어 올바른 한일관계의 정립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21세기 들어 확대된 네오내셔널리즘 보다 심각한 배타주의적, 혐오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젊은 층이 취하고 있는 최근의 적대적이고 혐오적인 「민족배제주의」인식의 근저에 상징천황제의 존속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노가와(能川元一)는 설명한다. 노가와는 상징천황제를 담당하는 현 천황의 행위가 헌법을 준수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상징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결국 자신(우익)들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기 위한 선택지로서 ‘아시아’에 대한 반발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근대 이후 새롭게 창출된 천황제가 적극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담당해 왔던 정치적 기능이 희박하게 되어 새로운 우익계층인 ‘네트우익’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즉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천황제’의 존재가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비판 없는 전승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헤이세이 천황은 전대의 쇼와 천황과는 달리 일반인에게 ‘황실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각인되어져 있다. 즉 「황실외교」를 시작으로 「지방순행」 「각종 행사나 식전에 출석」 하는 것이 천황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천황에 대한 일본국민의 우호적인 인식과 새로운 천황상의 형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각종 미디어는 천황과 관련된 일들을 보도할 때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무」를 우선하는 천황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천황)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일본국민을 위한) 「공무」를 우선하는 ‘천황상’의 형성은 직접적인 「정치적」 형태로서가 아니라 「상징」과 「표상」을 통한 「기억의 공동체」로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카시마(中嶋啓明)가 지적한 「(천황은 정부관계자가-인용자) 「히노마루·기미가요」를 강제하는 것을 타일렀다고, 오로지 「격차·빈곤」에 대해 마음을 아파하고 있다고 감사히 여긴다(그 때 수 천만 엔의 세금을 들여 네덜란드에 “사적” 정양을 하기위해 (일본을-인용자) 떠날 수 있는 일족인 것을 언급하는 미디어는 일체 없다. 이 기만!」³⁹⁾이라고 개탄한다. 상징천황제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국헌법 제4조는 「천황은, 이 헌법에 규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고,

る日教組などがそれを妨げている」이다. 能川元一(2009.5) 「若者に根付く「民族排外主義」の牙が向かう先」이다. 『週間金曜日』749号, p.27

39) 中嶋啓明(2009.5) 「オベンチャラまみれで気持が悪い」 『週間金曜日』749号, p.26, 원문은 「「日の丸・君が代」の強制をたしなめたと、もろ手を上げ、「格差・貧困」に心を痛めているとありがたがる(その際、数千万円の税金をかけオランダに“私的”静養に出かけることのできる一族であることに触れるメディアは一切ない。この欺瞞!)이다.

국정에 관한 권능을 지니지 않는다⁴⁰⁾」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황은 어느새 ‘황실외교’라는 미명을 부여 받고 친선외교의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일본국민의 대부분은 그러한 천황의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외교’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정치적 행위이다. 그러므로 천황이 연출하고 있는 ‘황실외교’는 비록 친선외교라고는 하지만 명백히 위헌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일본사회는 천황을 통해 평화의 이미지를 실현한다고 하는 새로운 ‘천황상’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는 ‘근대천황제’를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상징천황제에 대한 규정이 근대천황제의 규정을 윤색하여 구성되어졌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점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천황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즉, 근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의 왜곡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일본이 새로운 ‘천황상’을 창출하는 것이 역사적 프로세스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새로운 ‘천황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기억의 전승이 근대사를 둘러싼 역사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5. 나가기

문화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신화는, 신화를 공유하는 집단의 정체성의 모태이자 근거를 나타낸다고 한다. 천황의 계보가 고지키(古事記)와 니혼쇼키(日本書紀)의 신화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천황>이 일본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일본의 역사 속에서 천황이 소멸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로 천황이 ‘신화’를 매개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역사 속에서 ‘천황’을 부정하는 행위는 집단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자신들이 획득한 권력에 대한 정체성(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단절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무의식적인 인식이 천황을 온존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역사 속의 모든 권력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스스로 획득한 권력에 대한 ‘정통성’을 찾고자 한다. 이 점에서 신화로 담보되어 있는 ‘천황’은 권위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더구나 자신들의 힘으로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는 상대였기에

40) 원문은 「天皇は、この憲法の定める国事に関する行為のみを行ひ、国政に関する権能を有しない」이다. 家永三郎(1977), 앞의 책, p.794

존속시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 속에서 천황은 통치하는 자였다기보다는 권력을 존속시킬 수 있는 권위를 창출하는 자였었다. 이는 천황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시아의 근대는 국가위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일본 역시 ‘개항’의 압박 속에서 ‘불평등조약체제에 편입하는 과정을 거쳐 근대에 편입하게 된다. 천황과 천황제는 이러한 대외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필연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천황제를 <창출>로 해석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이다. 대외위기를 극복하는 논리로 선택되었던 근대천황제는 입헌군주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천황제파시즘으로 변용되어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러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반인류적이며 반역사적인 전쟁의 구심점역할을 ‘천황’이 수행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전후 일본의 천황, 천황제는 마땅히 단절되었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역사적 아이러니는 천황제를 존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물론 헌법 개정을 통해 천황제의 제도상 모습은 바뀌었다. 하지만 천황제를 구성하는 중심에 있는 천황은 전전의 절대군주에서 전후의 상징군주로의 외투만 갈아입었을 뿐,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에 현대일본사회에 있어서의 ‘천황’의 역할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통합을 위한 ‘상징적’인 존재로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현실 속의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징’을 창출하는 존재로 변용되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리스 알브박스 등의 기억연구자들은 사회적 기억의 한계를 70년으로 추정한다. 어느새 전후 7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기억의 전승에는 ‘표상’과 ‘표식’, ‘텍스트’와 ‘의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이 점에서 기억의 전승을 매개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오내셔널리즘을 시작으로 네트우익의 등장과 확산, 자국중심주의적 역사인식과 영토분쟁의 심화 등은 집단적(사회적)기억의 재구성이 역사인식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가 수행하는 ‘상징’에 대해 주의해야 할 부분이며 본고의 문제의식이기도 한 것이다. 끝으로 일본의 ‘천황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제도’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이며, 기억을 전승하는 ‘문화’를 매개로 하여 ‘기억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다음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參考文獻】

권귀숙(2006) 『기억의 정치 -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문학과지성사
 김선민의 공저(2009) 『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동북아역사재단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2 , 창비사
 야스마루 요시오, 박진우 옮김(2006) 『현대일본사상론』논형
 윤상인의 공저(2007) 『일본의 발명과 근대』이산
 박진우 편저(2006) 『21세기 천황제와 일본 - 일본 지식인과의 대담』논형
 家永三郎(1977) 『歴史のなかの憲法』東京大学出版部
 菅孝行(1987) 『現代天皇制の統合原理』明石書店
 鈴木正幸(2004) 『国民国家と天皇制』校倉書房
 福富節男ほか共編(1989) 『天皇制なんかいない』新地平社
 歴史科学協議会 編(1985) 『史料日本近現代史』
 歴史教育者協議会 編(1985) 『日本歴史と天皇』大月書店

논문투고일 : 2012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2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2년 07월 10일
 2차 수정일 : 2012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7월 25일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와 기억의 전승

GHQ의 의도하에 개정되고 공포된 일본국헌법은, 천황을 ‘일본국의 상징’으로 만드는 것으로 일본을 「무장해체」할 생각이었다. 역사적인 경위는 본문에서 개략하고 있지만, 맥아더의 의도가 크게 반영된 일본국헌법은 결과적으로 ‘천황제’의 존속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단절되지 않고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는 폐해를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천황제는, 역사적 반성도 전쟁책임에 대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전의 절대군주였던 천황은 일본국 국민을 통합하는 총람자로 그 지위를 계승하였다. 즉,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채, 천황은 일본국을 ‘상장’하는 존재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천황이 일본신화가 담보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신화란, 신화를 계승하는 집단의 아이덴티티를 상징한다. 이점에서 전후의 상징천황은 일본국의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표상이 될 수 있고, 일본이란 집단의 기억을 전승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일본이 상징천황을 통해 새로운 ‘천황상’을 창출하는 행위는 집단적 기억의 윤색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역사인식의 왜곡을 조장하는 기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mperor as a symbol of the unity of the people and succession of memory

Amen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intention of GHQ Japanese Constitution, the Emperor a symbol of Japan as Japan by creating a "dismantling militant" was going to do. Inspector at the historic overview of the body, but MacArthur's Japanese Constitution is intended largely as a result reflected 'emperor' has made possible the continuation of. Thus in that unbroken succession of modern Japanese emperor is a symbol of the potential dangers and will Emperor, the historical reflection of the war did not receive any punishment for the responsibility. As well as toured the Emperor of Japan was an absolute monarch to consolidate national overview of the status of party succeeded. In other words, while holding substantial issues, the Emperor of Japan to the 'symbol' was transformed into the present is. The problem with Japan's Emperor, the Japanese myth is that the presence in mortgage. The myth is a symbol of the identity of a group to succeed. In this regard, a symbol of post-war to represent the identity of the Emperor of Japan will be represented, and Iranian collective memory of Japanese tradition, is a parameter that can be. Thus, the modern symbol of the Emperor of Japan through the new 'Image of the Tenno' collective memory of the act that creates will be led to embellishment, distortion of history that promotes awareness of the community will be good memories to remember the community can be is that.